국제

국제음반산업협회, 전 세계 음악 산업 동향에 대한 연례보고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9'를 발표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국제음반산업협회는 2019년 4월 2일, 2018년 작년 한 해 전 세계 음악 및 영상 분야의 음악 관련 콘텐츠 매출을 비롯한 음악 산업의 동향을 조사한 연례보고서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9(Global Music Report 2019)'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음반 산업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9

○ 2019년 4월 2일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음악 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글로벌 음악 보고서 2019(Global Music Report 2018)'를 발표하였음.

○ 이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총 매출은 191억 달러(한화 약 2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7년의 173억 달러(한화 약 20조 1천억 원)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서 전 세계 음악 시장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7년 8.1% 성장에 이어서 2018년은 국제음반산업협회가 1997년부터 전 세계 음악 산업 동향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8년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총 매출액은 음악 시장 역사상 최고치였던 1999년의 252억 달러(한화 약 29조 3천억 원)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2006년도의 매출액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 세계 음악 산업의 발전 및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도 유료 구독 스트리밍(paid subscription streaming) 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8년 작년 한 해 Spotify와 Apple Music 등이 선도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의 매출액(overall streaming revenues)은 2017년 대비 34% 성장하며 세계 음악 산업 전체 매출(global revenues)의 거의 절반 수준인 4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료 구독 스트리밍서비스 분야의 매출액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32.9% 증가하였음.

-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유료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가 2억 2천 5백만 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한 매출액은 전 세계 음악 산업 전체 매출액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음악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11.7% 성장)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16.8% 성장)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17.9% 성장),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브라질(15.4% 성장)의 음악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브라질과 멕시코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4년 연속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아시아 지역은 사상 최초로 유형 및 디지털 음악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2017년 조사에서 글로벌 톱 10위[<1>]에 처음으로 진입했던 중국은 2018년 조사에서는 7위에 올랐음.

기타 내용

○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분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2%나 감소하였으며, CD 등 유형적(physical) 음반 서비스 분야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영국의 BBC와 로이터를 비롯한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Ariana Grande, Drake, Ed Sheeran, Bruno Mars 등의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 세계 음악 산업의 매출 확대를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BTS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였음.

평가 및 시사점

○ Frances Moore 국제음반산업협회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음악 산업은 전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의견을 밝힘.

○ 전 세계 음악시장은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그 이상으로 발전되고 개발된 지역에서도 합법적이고 수익이

<1>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영국, 4위 독일, 5위 프랑스, 6위 대한민국, 7위 중국, 8위 호주, 9위 캐나다, 10위 브라질

되는 음악 콘텐츠의 이용(legitimate and monetised consumption)은 기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s://www.ifpi.org/downloads/GMR2019.pdf

https://reut.rs/2GTCGAI

https://bit.ly/2J1sBTK

https://bit.ly/2VeAKaC

https://bit.ly/2ZLC8UL

미국

제9항소법원, 웹사이트 개선 작업 과정에서 이를 맡은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의뢰인도 기여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김지영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맡긴 회사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판단한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여책임은 인정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 Jim Erickson은 사진작가로 자신의 회사 Erickson Production Inc.를 통하여 자신의 사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피고 Kraig Rudinger Kast는 다양한 사업체와 웹사이트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그 중 하나인 Atherton Trust는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웹사이트 개발회사, Only Website(이하 "온리 웹사이트")와 계약하여 이 사건 회사 웹사이트의 개선 작업을 맡겼음.

- 피고는 웹사이트 개선 과정에서 콘텐츠와 다른 소재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고, 웹사이트의 디자인, 개발 그리고 마무리 등의 작업 전반에 걸쳐 피고의 승인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 피고는 온리 웹사이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쟁회사인 Wells Fargo Private Bank(이하 "웰스 파고")의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주길 원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온리 웹사이트에서만 제공되는 선택지에서만 사진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 피고는 온리 웹사이트가 제작한 웹사이트 레이아웃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한편 로고를 더욱 웰스 파고와 같이 만들어 달라고 언급하였고, 웰스 파고의 사진과 같이 더 캐주얼한 사진을 사용해달라고 언급하는 등 웹사이트 개선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였음.

○ 결과적으로, 피고 웹사이트에 사용된 사진 세 장(이하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들은 웰스 파고와 원고의 회사 Erickson Productions, Inc.를 통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1>]

- 피고 회사, 피고 그리고 온리 웹사이트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는 Picscout이라는 온라인 이미지 추적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였음.

- 2011년 7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즉시 온리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였지만 손해배상은 거부하였음.

법원의 판단

○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여부

-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직접 침해자인 온리 웹사이트를 피고가 고용했기에 피고의 대위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위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 능력과 권리가 있었는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를 입증해야함.

<1> 재판부는 피고가 온리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들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는지 혹은 온리 웹사이트가 단독으로 행한 작업인지 밝혀내지 못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온리 웹사이트의 침해로부터 세 가지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 (1)이 사건 사진들이 피고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고객들을 유인하였음, (2)피고가 원고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 (3)피고 웹사이트 출시가 빠르게 되었음.

- 법원은 (1)주장에 대하여 사람들이 원고 사진을 보기 위해서 또는 원고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는 주장을 원고가 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도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음. 그래서 이 침해는 법률상의 문제로서 피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2)주장에 대하여 온리 웹사이트는 틀림없이 원고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직접 침해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대위 침해자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온리 웹사이트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3)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사진들이 어떻게 피고 웹사이트가 빠르게 출시되는데 사용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피고가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함.

- 그렇기에 본 사건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여부

- 기여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직접 침해자의 인식(knowledge)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여 또는 해당 침해의 권유가 있어야 함.

- 피고는 침해에 대한 “인식(knowledge)”에는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reason to know)”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 또는 “의도적인 외면(willful blindness)”만이 충분하다고 하였음.

- 그렇기에 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인식”에 “알 수도 있는”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plain error)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이미 본 사건 법원에서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know or reason to know)”를 인정한 판결[<2>]과 그렇지 않은 판결[<3>]이 모두 나왔으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인식” 요건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4>] 이 후에 나온 판결임.

- 그렇기에 본 사건 법원은 배심원에 대한 지시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기여침해를 구성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음.

○ 고의 판단(Willfulness Finding)

-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피고의 대위책임 그리고 기여책임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지방법원이 배심원단에게 만약 피고가 “원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should have known)면” 침해에 고의가 있다고 알려준 것이 오류라고 주장하였음.

- 본 사건 법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저작권법 하에서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반드시 (1)피고가 실제로 침해 행위를 인식할 것, (2)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결과일 것을 요구함.

- 지방법원에서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라고 알려준 것은 이러한 체계에 맞지 않는데, 이는 과실기준(negligence standard)이기 때문임. 피고가 위험을 “알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라고 말하지만, 그 위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위험에 대해 ‘부주의’했다고 말하는 것임.

- 부주의는 실제 인식, 의도적인 무시 또는 부주의함과 같은 적합하게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신 상태보다 적은 과실이 있는 정신 상태임.

- 본 사건의 증거들이 피고가 과실인 것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부주의함, 의

<2> Louis Vuitton Malletier, S.A. v. Akanoc Solutions, Inc., 658 F.3d 936 (9th Cir. 2011).

<3> Luvdarts LLC v. AT&T Mobility, LLC, 710 F.3d 1068 (9th Cir. 2013).

<4>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도적인 무시 또는 실제 인식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사건 법원은 판단함.

- 그렇기에 본 사건 법원은 지방법원이 배심원단에 잘못 알려준 것은 피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도록 하였기에 고의 판단 사안에 대해서 파기환송 하였음.

평가 및 전망

○ 본 사건은 법원은 피고의 대위책임은 부정하고, 기여책임은 인정하였으며, 고의 판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하였음.

○ 배심원단이 사실판단을 하는 미국 법원의 특성상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법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임. 본 사건 피고도 항소심인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에 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단에 잘못 알려준 것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고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판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파기환송 하였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UKGlEQ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이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진 등의 이미지를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저장, 수정 등을 함으로써 디지털 사진 콜라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고안하여 제공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스로도 복제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19년 4월 17일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함.

polyvore.com의 운영 방식

○ Polyvore, Inc.(이하 'Polyvore')는 가상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인 polyvore.com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임.

○ Polyvore는 polyvore.com에서 'Clipper'라는 도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이미지를 '오려와서(clip)' Polyvore 웹사이트에 모아 놓고 저장(store), 수정(modify), 자르거나(crop) 또는 다른 이미지 위에 얹어(superimpose) 디지털 사진 콜라쥬(digital photo collages)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함.

○ 이용자가 이미지를 polyvore.com에 업로드를 하면, Polyvore는 일련의 자동화된 기술적 과정(technical processes)을 진행함.

- 이미지의 원 출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해당 이미지에 첨가하고, 해당 이미지에 Polyvore.com 상의 명확한 위치를 확인하게 해 주는 URL을 부여한 후, polyvore.com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사진 색인(index)을 붙임

○ 이용자가 업로드한 모든 사진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적으로 게시되므로, 이 과정에서 Polyvore 직원이 게시될 사진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음.

사실 관계

○ BWP Media USA Inc.(이하 'BWP')는 유명인들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진들을 온라인에서의 이용하거나 출판 목적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업체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BWP의 허락 없이 polyvore.com에 게시된 BWP의 79장의 유명인들 사진임.

○ 2013년 11월 BWP는 Polyvore의 사진 게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BWP의 배타적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Polyvore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BWP는 Polyvore는 스스로 BWP의 사진들을 복제, 저장, 게시하였고 BWP의 사진에서 메타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이용한 '표준적인 기술 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를 무력화하였으므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Polyvore의 직접 및 기여 침해 책임 모두를 인정하지 않음.

- 지방법원은 BWP가 Polyvore의 책임 인정 요건인 '의도적인 행위(volitional conduct)'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Polyvore의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지방법원은 Polyvore의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Polyvore가 면책 조항(DMCA Safe Harbor)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않음.

항소법원의 판단[<1>]

○ Polyvore의 직접 침해 책임(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인정 요건인 '의도적인 행위'의 존재

-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해당 콘텐츠의 침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저작권법 제504조).

-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단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침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시작한 것임.

- ISP는 저작권 침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할 저작물을 선택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행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단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게시하고 게시할 이미지 선택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 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례임.

- Polyvore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임을 아는 특정 이미지만을 Polyvore 웹사이트로 가져오기 위해서 Clipper를 고안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반

<1> BWP Media USA Inc. v. Polyvore, Inc., 16-2825-cv (2nd Cir. Apr. 17, 2019)

면에 Polyvore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clip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한 것임은 증거에 의해 입증됨.

- 따라서 Polyvore가 Clipper를 고안할 당시 및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의 사본을 1부(one copy) 복제할 당시에는 Polyvore는 단지 이용자가 clip한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관(conduit)으로 기능한 것에 불과할 뿐 저작권 침해와 관련 있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음이 인정됨.

- 그러나 이용자가 BWP의 이미지를 한 번 clip한 이후에 이용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Polyvore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사본을 복제하여 게시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Polyvore가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무력화하였는지 여부

- 저작권법은 보호되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기술적인 조치를 '표준적인 기술 조치'라고 정의함(제512조 (i)항 (2)).

- '표준적인 기술 조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 개발되고,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3)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함.

- '조치'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적용하거나 실행하기를 거부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선례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지에 적용된 메타데이터가 '표준적인 기술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미지에 적용된 메타데이터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자발적이고 여러 산업에 걸치는 표준화 과정에서 저작

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동의에 따라 개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메타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파괴한 것이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무력화한 것에 해당하여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Polyvore에게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지 않음.

평가

○ 이 판결은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한 도관의 지위를 넘어서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H0ytvj

https://bit.ly/2DIJZt0

미국

법원,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박형민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임)

2019년 3월 28일 미국 중부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 원고 Design Basics, LLC는 건축 저작물을 제작, 발행, 그리고 라이센싱하는 회사임. 원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원고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건물 설계를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였음.

○ 피고 Fogarty측과 Haubert측은 모두 건설업자이며, 피고 중 Fogarty측은 원고의 설계도면 카탈로그를 3개 이상 구매하는 동안 라이선스를 하나도 취득하지 않았고, Haubert측은 32개 이상의 카탈로그를 구매하고 5개의 건축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음.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건축 및 광고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 저작권 침해 4건, 비고의적 저작권 침해 4건, DMCA 위반 1건을 주장하였음.

○ 피고측 Haubert는 원고가 피고용인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를 찾으면 포상을 주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에서 저작권법과 헌법상의 지식재산권 절의 목적[<1>]에 직접적으로 반하여 "저작권 행사를 방패로서가 아닌 무기로서 사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함. 또 다른 피고 Fogarty도 이와 비슷하게 원고가 "침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면서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억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피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 남용에 대해 피고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장된 저작권을 원고가 남용한다는 점에 대해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고, 등록된 저작권의 범위 및 유효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피고의 저작권 남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실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저작권 남용은 "법원은 원고의 권리 행사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러한 남용은 "저작권이나 특허의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남용하는 동안에는 권리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였음.

- 저작권 남용의 원칙은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예술적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대되는 반(反)경쟁적인 행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작권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면 남용이라고 언급하였음.

<1> Article I Section 8 Clause 8 - Patent and Copyright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가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취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전략이 반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의 저작권 행사는 공공의 창작행위를 장려하는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원고가 단순히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경우, 저작권 남용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함.

평가 및 시사점

○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 남용의 기준에 대해 확인하면서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과 일반적인 저작권 행사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Design Basics, LLC v. MTF Assocs., No. 1:17-cv-00031(Mar 28, 2019)

미국

연방고등법원,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알았어야만 한다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허원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알았어야만 하는(should have known)"의 요건은 의제인식(constructive knowledge)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과실(negligence)"에 해당하여, "고의(willfulness)"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의 제504조 침해에 대한 구제(§504. Remedies for infringement)에서 감면 요건에 해당함.

사실관계 및 지방법원 평결

○ 피고 Kast(Kraig Rudinger Kast)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다양한 사업체와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임. 피고는 한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개발회사(Only Websites)와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Wells Fargo의 웹사이트를 모방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음. 피고는 Wells Fargo의 웹사이트에 있는 세 장의 사진을 모방하라고 개발회사에게 요구하였고, 개발회사는 이 사진들을 수정하여 피고의 웹사이트에 사용함.

○ 원고 Erickson(Erickson Productions, Inc. and Jim Erickson)은 피고가 사용한 사진을 제작하였음. 원고는 2011년 7월에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청함. 피고는 즉시 해당 사진을 웹사이트에서 제거하였으나, 손해배상은 거절함.

○ 원고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의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사용자책임에 의한 침해(vicarious infringement), 기여책임에 의한 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는 당해 저작권 침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C) (2) (침해에 대한 구제: 손해와 이익 - 법정 손해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들이 Wells Fargo의 웹사이트에서 복사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의 없이 개발회사가 복사했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자신이 복제된 사진들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고의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 피고가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고의 행위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에 대하여 주의태만 했다면 고의에 해당함.
- 또는 피고는 그러한 행동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하므로 (should have known) 의제인식(constructive knowledge)으로서 이는 고의에 해당함.

○ 피고는 “알았어야만 하는”의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부주의함(recklessness)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함.

○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함.

○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고가 고의로 각 사진들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기여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평결함.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C) (2)에 의해 사진 하나 당 150,000달러, 총 45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함. 이에 피고는 즉각 항소하였음.

항소법원의 판단

○ 저작권 침해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원고가 ① 침해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② 침해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direct financial interest)의 증명책임을 부담함.

- 원고는 두 번째 요건에 대하여, 본 사건 사진들은 피고의 웹사이트가 고객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피고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함.

-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직접" 이외에 침해행위와 경제적인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casual relationship)가 있어야 한다고 함.

- 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지방법원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저작권 침해 평결 주문을 파기함.

○ 과실(negligence)은 고의의 입증에 있어서 악의(actual knowledge),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 및 부주의함(recklessness)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인식 상태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임[<1>].

- 항소법원은 악의, 의도적 외면 또는 부주의함이 고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과 의제인식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원고의 입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결함. 즉, "알았어야 하는"이라는 요건은 과실에 해당하여 고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음.

-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저작권 고의 침해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이 재량권 행사의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평결 주문을 파기환송함.

<1> Global-Tech Appliances, 563 U.S. at 770, 131 S.Ct. 2060; Unicolors, 853 F.3d at 992.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알았어야만 하는”이라는 요건은 고의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감면사항에 해당함.

참고자료

D.C. No.5:13-cv-05472-HRL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9/04/16/15-16801.pdf

프랑스

법원, 불법저작물 접근차단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박성진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불법저작물에 대한 우회적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파리지방법원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조치를 명령함. 단, 해당 조치의 방법과 범위 등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하며, 이들은 모니터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신청인 Elsevier(이하, '신청인 1')는 의학 및 과학 분야의 학술자료를 그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유명 출판사임.

- 상업적 목적으로 그의 온라인 플랫폼과 'ScienceDirect'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구 자료들을 게재함.

○ 신청인 Springer Nature Ltd.(이하, '신청인 2')는 독일의 대형 학술지 출판사로서, 두 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유선 및 무선 인터넷 통신에 대한 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단순도관 서비스 제공자[<1>]임.

<1> Fournisseur d'accès à internet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이트(이하, '사이트')는 Sci-Hub 및 LibGen 임.

- 사이트는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인들에 의하면, Sci-Hub는 7천만 편에 이르는 과학 학술저널의 저장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학술저널의 다운로드 행위가 매일 70만 건씩 발생함.

- LibGen 사이트에서는 총 2천 5백만 편의 학술저널이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에 제공됨.

신청인의 신청 내용

○ 신청인들은 이들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중 핵심적인 57개 주소를 열거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이들 도메인 주소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파리 지방법원<2>에 신청함.

- 이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법(IP주소 차단), 기간 및 지리적 범위(프랑스령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모든 서지·도서를 포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에 덧붙여 신청인들은 그들이 명시한 차단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자신들이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이 신청인의 이와 같은 신청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사실상 앞서 나열

<2> 이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 L. 336-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CPI 제 L. 331-1조가 지칭하는 전문적 권리보호 단체(des organismes de défense professionnelle)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은 침해행위의 예방 혹은 정지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침해행위의 예방이나 정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음.

된 도메인 주소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및 접근차단조치 의무가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효과가 발생함.

○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이러한 차단조치의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이라고 주장함.

피신청인의 항변

○ 피신청인은 해당 신청은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첫째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접근차단조치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미리 지정한 신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항변함.

- 둘째로 이 신청내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경영의 자유(la liberté d'entreprendre)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주장은 비례성의 원칙(le principe de proportionalité[<3>])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함.

○ 한편, 접근차단조치는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신생 사이트 모두에 대한 선행적 접근차단을 요청하는 이 신청은 법원의 명령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다는 것이 피신청인의 항변임.

<3> 유럽 인권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이 정하고 있는 이 원칙은, 공권력에 의해서 유럽시민의 기본권이 저해되는 것이 용납되는 상황은, 그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이 맞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원칙임.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 - 4ème section, jugement en la forme des référés le 7 mars 2019.

○ 마지막으로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접근차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에게 청구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파리 지방법원의 결정

○ 2019년 3월 7일의 파리 지방법원은 Sci-Hub와 LibGen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 명령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채택되는 접근차단 조치의 성격과 소모비용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피신청인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방법은 피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과 여타 기본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함.

- 또한 피신청인이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은 신청인이 열거한 57개에 그치고, 자신은 신생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근차단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 한편 피신청인이 취해야하는 조치의 노후화와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접근차단조치는 일정기간 동안만 이행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함.

- 다만, 피신청인이 취하는 접근차단조치가 효력을 발휘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신청인이 해당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앞서 열거한 57개의 도메인주소를 가진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법원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마지막으로 접근차단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비록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참고 자료

http://bit.ly/2LdwRlQ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성인의 자녀가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존중권과 음반제작자의 재산권이 충돌하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 본안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유명 팝가수인 리안나(Rihanna)의 음악앨범 'Loud'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대하여 다툼.

○ 본안절차의 원고는 이 음반앨범의 제작자이며, 피고(이하 '청구인')는 인터넷 접속계약을 체결한 인터넷가입자로서 성년의 세 자녀를 둔 부부임.

○ 청구인의 세 자녀 중 한 명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음악앨범을 인터넷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다운로드에 제공함. 이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자 청구인은 장래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함. 하지만 원고가 요청한 손해배상과 침해 경고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지급은 거부함.

○ 청구인은 침해가 발생한 기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자녀 중 한 명이 이용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음. 원고는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함.

하급심 및 연방대법원 판결

○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 이전에 지출한 변호사 경고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함.[<1>]

- 청구인은 자신의 인터넷회선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로 추정되기 때문에(인터넷가입자의 '행위자 추정 원칙') 이러한 행위자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회선에 접속하였고 누가 행위자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함('2차적 설명의무').

- 청구인은 자녀 중 한 명이 침해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이용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자녀들이 이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2차적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행위자 추정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행위자가 됨.

- 고등법원도 청구인들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권리침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적 설명의무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2>]

○ 연방대법원도 청구인이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 [<3>]

○ 청구인은 연방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가족생활의 존중권(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청구함.

<1> LG München, Urteil vom 01.07.2015 - 37 O 5394/14.

<2> OLG München, Urteil vom 14.01.2016 - 29 U 2593/15.

<3> BGH Urteil vom 30.03.2017 - I ZR 19/16.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판소원을 기각함.[<4>]

○ 민사법원은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음반제작자의 재산권보호와 이와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 사이에서 어느 이익이 더 중요한지 비교하여 판단하고 이 경우 비례성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판결들은 청구인의 가족생활의 존중권을 침해함. 이 기본권은 가족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족을 방해하거나 가족에게 그 밖의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규정들은 이와 일치하지 않음. 가족생활의 존중권의 보호영역에는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관계도 포함됨.

○ 2차적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인터넷가입자에게 자신의 행위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년의 자녀를 민·형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도록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은 가족생활의 존중권의 보호범위에 해당되는 가족 내부의 관계를 침해한 것임.

○ 하지만 가족생활의 존중권은 제한이 가능함. 인터넷가입자는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침해행위의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가족생활의 존중권은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지 않음. 따라서 자녀 중 누가 그러한 침해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들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진실하게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는 소송절차가 진실의 발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임. 진실하게 진술해야 할 절차상 의무는 법원과 상대방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법관에게 권리 발견을 수월하게 함.

<4> BVerfG Beschluss vom 18. 02.2019 - 1 BvR 2556/17.

○ 물론 민사소송법도 자신에게 불명예가 되는 사실이나 이로부터 발생한 가벌적 행위를 밝히는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가까운 가족의 구성원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소송당사자나 다른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는 사실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증거법, 특히 증거제시조항의 공정한 적용은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된 의무임. 민사소송법은 설명의무 및 증거제시의무에 적합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두고 있음. 설명의무 및 증거제시의무는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적인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짐. 하지만 일방 당사자는 상황의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만, 타방 당사자가 그러한 영역에 있지 않아서 상황 설명이나 증거제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나 증거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벗어나므로 금지됨.

○ 이러한 기준들에 근거하여 연방대법원과 하급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8조(설명의무 및 진실의무)와 관련한 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1문(손해배상청구권), 제85조 제1항(음반제작자의 권리)을 해석한 판결들은 청구인의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이 판결들은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보호 이익과 청구인의 가족 보호의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재산권 보호가 우선된다고 본 것으로 헌법상 요청을 충족함.

○ 이 사안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청구인의 인터넷 이용의 영역에서 발생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기본법 제14조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 사안에서 청구인의 설명의무는 누가 저작권 침해자인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가족 관계는 침해되지 않음.

○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조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가족 내부의 관계가 보호됨.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이 보장되지만, 이러한 침묵이 일반적으로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가족생활의 존중권(제6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침묵이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기본법 제14조)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 가족 구성원이 단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상황이 인터넷가입자의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음.

○ 따라서 청구인이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평가 및 전망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년의 자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인터넷가입자인 부모가 법정에서 이 자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급심 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음.

○ 이러한 판결들에 대한 청구인의 재판소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가족생활의 존중권 보다는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헌법차원에서 한층 강화하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bverfg.de/e/rk20190218_1bvr255617.html

https://bit.ly/2VBe3Rz

https://bit.ly/2Y1qQKm

중국

광저우시월수구 법원, 공자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은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

박다현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하여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광저우시월수구 법원은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한 것은 창작행위가 아닌 복제행위이므로 독창적이지 않아 이 사건 사진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공자의 화상도를 찍은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

○ 원고는 베이징 파노라마 비전네트워크기술회사(이하 원고)이며 '중국그림창고'에 공자의 화상도를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었음. 피고는 블루 돌고래 유람선 유한공사(이하 피고)이며 시나 웨이보 계정에 원고의 사진을 올림.

○ 원고는 공자의 사진은 공자의 화상도를 찍어 얻은 것으로 소재의 선택, 정면을 응시한 촬영 각도, 인공 섬광 장비를 사용해 원화에 상응하는 밝기를 유지하므로 저작물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권리침해 중지와 1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배상 및 공개사과를 요청함.

쟁점

○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재현한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판결

○ 광저우시월수구 법원은 원고가 공자의 화상도를 사진으로 고도로 재현한 것은 창작행위가 아닌 복제행위이므로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

- 사진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 독자적 완성과 창작성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독창성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함.
- 사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공자의 화상도를 고도로 복제하여 독창성이 없고, 촬영과정과 촬영결과도 새로운 예술성과 심미성을 띄지 않음.

평가 및 전망

○ 어떠한 물품을 고도로 재현하기 위해 정밀하게 재현한 사진은 고도로 재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 참고 자료

http://www.bjnews.com.cn/news/2019/04/22/570928.html

http://www.sohu.com/a/309713024_119778

중국

최고인민법원,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백지연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2018년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주요 내용[<1>]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지식재산 홍보 주간"을 맞이하여 <2018년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을 발표함. 2018년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은 총 334,95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97,709건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중 행정 일심 사건과 민사 일심 사건의 수가 대폭 상승해 전체 사건 수 대비 각각 53.57%, 40.97%에 달함.

○ 2018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은 총 4가지의 특징이 있음.

- 첫째, 사건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중국 전역의 법원 중 베이징, 상하이, 쟝쑤, 저쟝, 광둥 다섯 개 성의 사건 수가 상위 5위를 차지했으며 이 다섯 성 이외에는 서부 지역의 사건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의 법원으로는 하이난 법원(전년 대비 156.16% 증가)과 흑룡강 법원(전년 대비 130.71% 증가)이 있음.

- 둘째, 판례의 영향력이 증가함. 최고인민법원이 공개 법정으로 심리한 크리스챤 디올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건은 재외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상하이 푸동법원에서 심리한 반부패를 다룬 저작물<인민의 명의>에 관한 판례가 사회의 주목을 끌며 일반 대중 및 관련 업계에 판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1> 고서적을 대조해 원문을 확인하는 것

- 셋째, 사건 심리의 난이도가 상승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관련 사건 및 신 유형의 사건이 증가하며 심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음. 중국 내 첫 소리상표인 '디디(嘀嘀)'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하이시 인류 DNA 연구소의 인간 DNA 측정 기술관련 특허 침해소송, 중국의 3대 콘텐츠 기업인 요우쿠(优酷信息技术北京有限公司)와 챈션온라인기술발전유한공사(千杉网络技术发展有限公司)의 플랫폼 내 콘텐츠 관련 침해소송 등이 그 예임.

- 넷째, 법원의 사건 종결률이 증가함. 베이징시 법원의 종결된 일심 사건의 수는 49,596건으로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후난성 법원의 종결된 일심 사건 수는 9,545건으로 동기 대비 69.08% 증가함. 그 외에도 후난성 법원, 천진시 법원, 사천성 법원, 허베이성 법원 역시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한 종결률을 보임.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관련 법률 적용 및 법리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중국법원 지식재산 보호 10대 판례 및 50대 사례를 발표함. 그 중 28개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나온 향후 법률 적용에 관한 37가지 주요 법리를 소개함. 37가지 주요 법리 중 특허 관련 법리가 18건, 상표 관련 법리가 9건, 저작권 관련 법리가 2건, 부정경쟁 관련 법리가 1건, 식물품종 관련 법리가 1건, 반독점 관련 법리 2건, 그 외 4건은 소송법 관련 법리임.

○ 저작권 관련 법리 중 첫번째는 고(古)서적의 점교(点校)로 인한 결과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임. 원고는 2008년 6월부터 민국시대의 고 서적을 점교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해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점교작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한해 원고가 동의함. 그러나 2009년 9월 공동작업이 무산되면서 피고는 원고가 점교작업물의 출판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본인이 스스로 점교작업을 마무리한 뒤 출판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 침해로 기소했으며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인 최고 인민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6만위안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시함[<2>]. 본 <사법보호 현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점교작업은 지식 노동의 결과물이며 점교작업자에 따라 고서적 원문에 대한 다른 이해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점교작업은 독창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함.

○ 저작권 관련 두번째 법리는 실용예술작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것임. 베이징중롱렁성목업유한공사(北京中融恒盛木业有限公司)와 줘상밍서가구용품회사(左尚明舍家居用品 (上海) 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 사건[<3>]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실용예술품이라 함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실용성은 사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예술성이 표현된 부분은 표현의 범주에 속함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함. 미술작품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실용예술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저작물의 일반 구성요소와 미술작품의 특정 구성요소를 만족하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vu2YDi

http://news.zhichanli.cn/article/8208.html

<2> (2017)최고법행재76호 판결문

<3> (2016)최고법민재175호 판결문

호주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호주 소비자위원회는 저작권 이용허락 관련 분쟁이 소송에까지 번지기 전에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호주 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배경

○ 지금까지 호주 사회는 저작물이 특정인에 의해 독점되거나 (quasi-monopoly) 저작권 단체/협회 등에 의해 독점되어 왔음. 문제는 이러한 권리자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이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이 없었음.

○ 호주 소비자위원회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표현에 의해 차별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예를 들어, 저작권자들은 타 재화와 달리, 수요를 잃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경쟁에 따른 수요 하락 가능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왔고 따라서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힘들었음.

○ 이에 2019년 4월, ACCC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저작권자가 평등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이용허락을 맺을 수 있도록 계약 시 적용이 강제되는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은 3단계를 거침. 먼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최종 사용자 (End-user) 로부터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the Willingness to Pay, WTP)가 있는지 파악함.

○ 다음으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주기 위해 얼마 만큼의 금액을 받을 의사(Willingness to Supply, WTS)가 있는지를 파악함.

○ 마지막으로, 저작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저작권자가 제시한 금액을 차감함. 이렇게 나온 값이 양 당사자가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이용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금액임.

○ 양 당사자들은 이 시작 금액으로부터 금액을 다소 줄이거나 늘일 수 있음.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호주 저작권법 제157A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판 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작 금액에서 무리하게 저작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없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ACCC의 결정은 법원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와 저작권 단체/협회에도 적용됨. 따라서 더욱 합리적인 이용료로 대중이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www.accc.gov.au/regulated-infrastructure/communications/intellectual-property/copyright-guidelines-2019

https://www.accc.gov.au/publications/accc-guidelines-to-assist-the-copyright-tribunal-in-the-determination-of-copyright-remuneration